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정미라**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
| 2. 개인의 등장과 근대적 분열 | 4.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 |
| | 5. 맺는 말 |
-

■ 국문초록

헤겔의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이념이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다.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에서 ‘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마무리되는 ‘인륜성’을 자유 실현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인륜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에서 행해진 자유에 관한 헤겔의 이러한 논의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헤겔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한 국가주의 철학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수렴된다. 본 논문은 헤겔이 자신의 『법철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헤겔에 있어서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헤겔, 개인의 자유, 근대의 자연법, 국가, 인륜적 공동체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223)

** 전남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헤겔의 실천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근대 유럽의 지배적인 이념이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 체계 중 ‘정신철학’에서 자유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특히 그의 학문적 체계 중 객관정신에 해당하는 『법철학』은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논리적 과정을 담고 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추상법”을 제시한다. 그는 『법철학』의 첫 장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법’에서 개인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산(소유)권의 문제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실현의 우선적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헤겔에게서 재산은 사회적으로,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된 소유라는 점에서 단순한 점유와 구별되며, 재산에 관한 사회적인 인정 문제, 즉 재산에 관한 권리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추상법’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지닌 주체들은 서로에 대해 단순히 사적인 개인이 아닌, 서로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로 인정하는 법적 개인(Person)¹⁾이며, 이러한 법적 개인이 ‘추상법’의 주체를 구성한다. 또한 개인들이 서로를 법적 개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들의 고유한 권리가 된 재산권은 ‘추상법’이라는 사회적 수단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²⁾ 헤겔은 ‘추상법’과 함께 자유의 물질적 조건이, 그리고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개인이 정치적 질서의 시작이자 자유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인 ‘재산권’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철학』은 궁극적으로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라는 공동체적 삶을 다루고 있는 “인륜성”으로 마무리

-
- 1) Person은 일반적으로 인격으로 번역되는데, 인격은 한국어에서 도덕적 능력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법적 개인으로 번역함.
 - 2) 헤겔은 ‘추상법’을 “자유가 구현되는 최초의 양식”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7*,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33 Zu. 독일어에서 Recht는 법이라는 의미와 권리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권리(Recht)는 재산에 관한 ‘법’(Recht)을 통해 규정된다.

된다.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헤겔의 『법철학』은 각각의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차원 높은 개념의 변증법”적인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진리는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의 형식”³⁾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법철학』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추상법’은 자유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 지양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헤겔은 ‘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마무리되는 ‘인륜성’을 자유 실현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인륜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에서 행해진 자유에 관한 헤겔의 이러한 논의는 많은 비판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헤겔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한 국가주의 철학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수렴된다.⁴⁾

본 논문은 헤겔이 자신의 『법철학』에서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개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서양 근대의 분열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헤겔의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고(2장), 근대의 위대한 성취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함께 새로운 도덕규범으로 등장한 자율성의 문제에 관한 헤겔의 문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3장). 마지막으로 『법

3) Hegel, G.W.F., 앞의 책 § 31 Anmerk 헤겔은 사유의 구조를 다룬 자신의 『논리학』에서 “지양된 것은 그러한 지양을 통해 무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지양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 이전의 지양된 것을 여전히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 지양된 것은 동시에 보존된다”라는 변증법적 사유의 구조를 통해 지양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Hegel, G.W.F.,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5*, Frankfurt a. M., Suhrkamp, 1970, 113면.

4) 이와 관련된 논의는 Ottmann H., *Individuum und Gemeinschaft bei Hege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2면~4면. 참조. 헤겔을 국가주의 철학자로 비판한 대표적 사상가는 포퍼를 들 수 있다.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헤겔에게 “국가는 모든 것이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며”, 헤겔 철학이 “개인적 인륜성과 양심을 완전히 경시하는 국가의 절대적이고 인륜적인 권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사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Popper, K.R.: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Feinde*, Tübingen, J.C.B.Mohr, 1992, 39면.

철학』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 실현과의 연관성 속에서 헤겔의 인륜적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4장)

2. 개인의 등장과 근대적 분열

근대성을 상징하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근대 사회는 사유하는 “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유럽 사회를 지배해 온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유대감과 농경사회 특유의 공동체 의식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과학의 발전은 개개의 인간에 내재해 있는 사유 능력의 중요성을, 그리고 경쟁에 근거해 있는 시장 경제의 발전은 공동체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촉발시켰다. 따라서 근대적 개인은 신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자율적인 판단 능력, 즉 이성 능력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사유능력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인 주체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고의 능력으로서 진리와 선을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또한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해주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세계의 주인으로서 세계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지니게 하는 중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개인이 지닌 절대적인 권리의 확장은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하고, 이와 함께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을 함축하게 된다.

근대 대부분의 정치사상가들은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의 확장이 초래하게 된 사회적 무질서의 위험 속에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원리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작한다. 특히 자연법에 이론적 토대를 둔 홉스를 위시한 사회계약론자들은 어떠한 규범도 존재하지 않은, 무질서한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질서가 가능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원천을 이성에 토대를 둔 개인들의 상호적인 계약으로부터 추론해낸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해

매개된 행위인 계약을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정치적 질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로 규정한다.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외면적인 결합체이며, 오직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상호적인 계약이 개인들의 이성에 의존하는 한 계약은 궁극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파기될 위험을, 개인들의 계약에 의존한 국가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을 노출하게 된다.

헤겔은 자신의 「자연법」 논고에서 근대의 지배적인 철학적 사유라 할 수 있는 근대의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 사유가 지닌 모순을 지적하며, 자신의 실천철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인륜성”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는 근대의 자연법을 홉스로 대변되는 경험주의적 자연법과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자연법으로 구분하는데, 그에 의하면 근대 자연법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로부터 자신들의 사유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갖는다. 근대의 자연법은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으며,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홉즈는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유추하여 개인을 자기보존이라는 자연적 권리를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주체로 규정한다. 또한 칸트는 개인을 사유의 무한성으로부터 추론되는, 이성적 능력을 선형적으로 부여받은 이성적 주체로 이해한다. 헤겔에 의하면 홉즈의 이기적 주체나 칸트의 이성적 주체는 모두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고립된 개인이며,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 이러한 개인들은 궁극적으로 타인과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관계하게 된다.

자기보존이 절대적 목적인 홉즈의 이기적 주체들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내적 원리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관계한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타인들과 대립함으로써 법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⁵⁾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인들은 자기보존이 위협받는 무질서한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적인 계약을 맺게 되며, 자신들을 외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를 요청하고, 궁극적으로 질서를 위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절대적인 자유와 권

5) Hobbes, T., *Leviathan*, Frankfurt a. M., Suhrkamp, 1984, 96면.

리를 지닌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국가의 절대 군주에게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내맡기게 되며, 개인과 개인들, 그리고 개인과 국가와의 계약을 통한 상호적인 관계는 결국 “최고권력 아래로 주체들이 절대적으로 굴종하는 관계”⁶⁾로 귀착된다. 홉즈의 자연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로 부터 출발하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즉 자신들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인간의 선천적인 이성 능력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는 칸트는 실천이성인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격적인 개인들이 다른 인격적 개인들과 공존하는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 자연상태에서도 사회적 삶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칸트에 의하면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격은 자신의 내면적인 보편적 법칙에 따라 다른 자유로운 인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한다.⁷⁾ 그러나 도덕적 주체인 인격은 항상 자신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인격들은 다른 인격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좇을 것이며, ‘...’ 자신의 권리, 즉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바를 행하고 그것을 위해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⁸⁾는 권리의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권리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충돌은 개별적 인격의 도덕법칙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로서 법, 즉 “공법”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⁹⁾ 따라서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는 외적인 공법의 지배를 받

6) Hegel, G.W.F., 앞의 책, 30면.

7) 이와 관련하여 이충진은 칸트에게서 “자연상태는 각각의 개인들의 상호적 관계를 규제하는 보편적 법칙하에 있는 인간관계이되 법칙적 규제의 실현이 공적 권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인간관계”로 규정한다. 이충진, 『이성과 권리』, 철학과 현실사, 2000, 140면.

8) Kant, I.,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I*, Berlin und Leibzig, 1907, 312면.

9)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 Berlin und Leibzig, 1907, 307면.

게 되며,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도덕적 자율성이 아닌 법적 규제, 즉 법적 규제의 체계인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결국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 즉 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구분은 “다수 사람들의 강제법칙 아래로의 통합”¹⁰⁾을, 그리하여 개인의 자율성은 “강제의 보편적 체계”¹¹⁾인 법과 국가에 의해 훼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홉즈는 개인들의 상호적인 불신으로부터, 칸트는 도덕성에 의존한 개인들의 자의성으로부터 강제성을 지닌 국가를 요청하지만, 그들의 공통된 이론적 토대는 이기적 개인으로 이해하든, 혹은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든 개인의 절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홉즈와 칸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개인을 절대적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지만 그들의 자연법 사상은 동일하게 법과 국가로 대변되는 “보편의지에 대한 개별의지의 대립을 전제”¹²⁾하며, 궁극적으로 국가로 대변되는 보편의지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헤겔은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근대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실체화 속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자연법사상은 근대의 시대 정신인 원자적 개인들을 실체화함으로써 고립적인 “개별자의 존재를 첫째이자 최고의 것으로 설정”¹³⁾한다. 즉 ‘주체의 절대성’에 근거해 있는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며, 개인에 내재해 있는 타자 관계성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늘 변화하는 ‘생동성’을 포착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헤겔은 ‘개인’의 등장과 함께 야기된 근대적 분열을 극복하고자 했던 홉즈와 칸트의 계약론적 시도는 결국 그들의 이론적 토대인 개인의 자연적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헤겔은 「자연법」 논고에서 자연법 비판을 통해 근대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새로운 원리로서 “인륜성” 개념을 제시한다. ‘인륜성’은 공동의

10) Kant, I., 앞의 책, 313면.

11) Hegel, G.W.F., 앞의 책, 472면.

12) 같은 곳.

13) Hegel, G.W.F., 앞의 책, 454면.

역사와 문화 속에 표현된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러한 민족은 단순한 집단 공동체라기 보다는 그 안에서 “생동하는 존재”¹⁴⁾인 개인과 개인이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연결된 “관계”들의 총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헤겔은 『법철학』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이러한 “인륜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3.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헤겔이 「자연법」 논고에서 행했던 근대 자연법 사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현실 세계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구체적 원리를 추적하는 『법철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헤겔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연적 권리로부터 시작해 법적 강제성으로 귀착하는 홉즈의 사유와 자율적 주체성을 중시하는 칸트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를 각각 “추상법”과 “도덕성”이라는 장에서 다루므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기반한 근대적 정신을 자유 실현의 중요한 토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헤겔이 『법철학』의 첫 장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법’에서 다루는 개인의 권리는 홉즈가 제시한 자연적 권리가 아닌, 상호 인정관계라는 토대위에 구축된 사회적 권리로서 법적 권리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연적 권리는 타인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법적 제도에 토대를 둔 사회적 권리로 인정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헤겔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현실적 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법철학』에서 ‘추상법’을 개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번

14) Hegel, G.W.F., “Über die wissenschaftliche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in: *Jenaer Schriften, Werke in zwanzig Bänden Bd.2*, Frankfurt a. M., Suhrkamp, 1970, 113면.

15) Hegel, G.W.F., 앞의 책, 481면. 김준수에 의하면 헤겔의 인륜성 개념은 “총체주의적(holistisch)”이며, “이러한 모델 속에서는 전체가 개체에 선행하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개체들의 존립과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없이는 전체도 있을 수 없으며, 양자는 상호 구성적”이다. 김준수, 「근대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근대의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Hegel, G.W.F., 『자연법』, 김준수 옮김, 한길사, 2004, 172면.

째 계기로 규정한다.

‘추상법’은 법적 주체인 법적 개인의 소유권을 문제 삼는데, 소유권은 생존을 위한 물질 자원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다. 즉 소유권은 자연적인 욕구나 충동, 그리고 자의에 따라 외적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점유와 달리 타인에 의해 인정된 사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두 가지 측면, 개인과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즉 헤겔이 ‘추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유권은 한편으로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자유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계기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소유권은 개인들 상호 간의 인정관계를 전제함으로써 자유의 현실적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법’의 소유권 속에 표현되는 이러한 인정관계는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법적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지니게 되며, “법의 명령은 법적 개인이 되어라. 그리고 타인을 법적 개인으로 존중하라”¹⁶⁾로 귀결된다.

법의 이러한 명령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법적 개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추상법’의 주체인 법적 개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들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에 자신을 내맡기는 자연적 개인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의식으로 고양됨으로써 타인을 자신과 같은 동등한 법적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¹⁷⁾ 헤겔에 의하면 상호인정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동일성에 기반한 개인의 보편적 의식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등하다’라는 근대적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근대의 법은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추상법은 궁극적으로 강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6)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36.

17) 헤겔은 선행된 연구의 “결과”를 『법철학』의 “출발점”(Anfangspunkt)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철학』이 이미 이전에 논의된 자신의 실천철학의 핵심 개념인 상호 인정이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Hegel, G.W.F., 앞의 책 § 2 Anmerk. 짙은 법적 개인이 지닌 이러한 보편성을 “내적인 독립성과 상호주관적인 인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Siep, L., “Intersubjektivität, Recht und Staat, in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und Horstmann R.P. (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258면.

법의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법은 보편적인 의식으로 고양된 개인들의 ‘동일성’에 기반한 상호인정관계를 전제하지만, 개인이 지닌 특수한 성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추상법은 개인들의 특수한 욕구를 억압하게 되며, 이와 함께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에게 단순한 의무와 명령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결국 특수한 욕구를 지닌 개인들은 법을 자신의 행위를 강제하는 억압적인 외적 기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법에 반하는 불법을 행하기도 한다. 헤겔은 강제성에 기반한 법이 함축하고 있는 불법의 가능성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추상법이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 즉 상호인정이라는 보편성에 근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추상법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헤겔은 ‘추상법’을 통해 근대가 성취한 개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자유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국 추상법이 지닌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개인들의 특수한 성격에 토대를 둔 자율성의 영역인 ‘도덕성’으로 이행한다. ‘도덕성’의 도덕적 주체는 외적으로 강제하고 명령하는 추상법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인 자율성에 의해 보편적인 ‘선’을 구현하고자 한다. ‘추상법’이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법’에 의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형태, 즉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도덕성은 모두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을 지향함으로써 타인과 긍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¹⁸⁾ 헤겔은 도덕적 주체를 “특수하고 주관적인 의지로서 보편적인 것 자체를 원하는”¹⁹⁾ 존재로 규정한다. 형식적 동일성에 토대를 둔 법적 주체가 동등한 권리에 근거해 있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 주체는 “주관적이고 특수한 욕구 충족의 총체”인 “복지”(Wohl)를 행위의 동기로 삼는데, 자신의 “복지”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를, 궁극적으로 모두의 복지가 가능한 “공동의 가치, 즉 선”을 추구한다.²⁰⁾

18) Hegel, G.W.F., 앞의 책, § 112 Zu. 참조.

19) Hegel, G.W.F., 앞의 책, § 103.

20) 헤겔은 복지와 행복이 “모든 유한적인 것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23. 따라서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은 자유의 실현이며 세계의 절대적인 궁극적 목적”이다. Hegel, G.W.F., 앞의 책, § 129.

헤겔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근대적인 인정이 도덕적 주체에게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은 “자유 의 이념을 체현하는 실재적 요소”이며, 이러한 주관성이 “자유 의 실현을 위한 참다운 소재”를 구성한다. 따라서 헤겔은 도덕적 주체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도덕적 주체에 의해 표현된 “주관적인 자유의 권리가 … 고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자 중심점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한다.²¹⁾ 즉 “자유 의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자유라고 불리는 것”²²⁾이며 개인의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²³⁾는 근대 이래 보편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관점과 함께 헤겔은 도덕적 주체를 자신의 실천철학의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칸트의 도덕성에 관한 사유를 자신의 자유에 관한 철학적 논의 속에서 받아들인다.²⁴⁾

그러나 헤겔은 개인의 주관성과 내면성에 의존하는 도덕적 주체가 지향하는 ‘선’이 도덕적 주체에 의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칸트의 도덕성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헤겔에 의하면 도덕적 주체는 선을 추구하지만 선과 일체가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다. 도덕적 주체는 자신의 특수한 내면적 주관성에 의존해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 “아직 선 속에 흡수되고, 그에 적합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²⁵⁾ 도덕적 주체는 자신과 보편적인 선을 구별하며, 자신이 “본질적인 것”으로 자각한 ‘선’을 목적으로 삼고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선’과 “관계”할 뿐이다.²⁶⁾ 따라서 도덕적

21) Hegel, G.W.F., 앞의 책, § 124 Anmerk.

22) Hegel, G.W.F., 앞의 책, § 105 Notiz.

23) Hegel, G.W.F.,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 503 Anmerk.

24) 나종석은 헤겔이 “칸트의 실천이성에 기초를 둔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나종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186쪽. 보비오는 추상법과 도덕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륜성의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헤겔의 『법철학』과 관련하여 자연법 전통의 “해체이자 완성”으로 이해한다. Bobbio, N. “Hegel und Naturrechtslehre”, Riedel, M.(Hrsg),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2*, Frankfurt a.M., Suhrkamp, 1975, 81면.

25)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131.

26) Hegel, G.W.F., 앞의 책, § 108 Zu. 참조.

주체는 “선 속에 있는 대신 선과의 관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선의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종속관계를 모순적인 방식으로 전도시킨다.”²⁷⁾ 즉 도덕적 주체는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으로서 ‘선’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선의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의존하여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본질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선을 종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자율적인, 주관적 확신에 근거해 있는 도덕적 주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선’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자의성을 내포하게 되며, 선은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완전히 무력한 것”²⁸⁾이 된다.²⁹⁾ 결국 도덕적 주체는 ‘선’의 이념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선’에 반하는 ‘악’을 행함으로써 타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게 된다.³⁰⁾ 따라서 도덕적 주체에 결부되어 있는, 이성적 능력에 토대를 둔 절대적 자율성이라는 칸트의 이념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 놓았지만, 이러한 절대적 자율성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제로 변질된다.

4. 인륜적 공동체와 개인

도덕성과 관련된 헤겔의 비판은 도덕적 주체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도덕성만으로는 도덕성이 추구하는 선의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헤겔은 도덕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연법」 논고에서 처음 제시한 ‘인륜성’ 개념을 발전시킨다. 헤겔은 ‘인륜성’을 통해 도덕성에 결핍되

27) Theunissen, M., “Die verdrängte Intersubjektivität i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Horstmann E.P.(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340면.

28) Hegel, G.W.F., 앞의 책, § 141 Zu.

29) 양계륜에 따르면 “헤겔이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도덕적 주체의 주관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의성과 우연성”이다. Angehrn, E.,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211면 이하.

30) 이와 관련하여 토이니센은 “도덕성이 선에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Theunissen, M., 앞의 책, 340면.

어 있는 객관성의 문제를 사회적 제도와 규범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륜적 공동체에서 작동되는 규범과 제도들은 ‘추상법’이 지향하는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닌, 보편적인 존재로 고양된 도덕적 주체들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 함께 만들어낸, “생동하는 선”³¹⁾으로서 규범과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생동하는 선”이란 규범과 제도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만드는 도덕적 주체들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과 주체들의 총체성을 의미하는 인륜성은 “자기의식적인 존재들의 토대이자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목적으로서, 결국 현존하는 세계로, 자기의식의 본성으로 형성된 자유의 개념”³²⁾이다.³³⁾ 도덕적 주체와 인륜적 제도들은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거쳐, 도덕적 주체들은 인륜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내재하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륜적 주체로 고양될 뿐 아니라 자신의 반성능력을 통해 인륜적 제도들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인륜성을 통한 도덕성의 지양은 헤겔의 철학적 방법론인 변증법에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지양이라는 개념에 내재한 “폐기와 보존, 그리고 고양”이라는 삼중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덕성의 폐기가 아닌, 도덕성의 보존과 더불어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³⁴⁾

31) Hegel, G.W.F., 앞의 책, § 142.

32) 같은 곳.

33) 이와 관련하여 정미라는 “인륜적인 것은 도덕적 주체에게 낯선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자신의 의식이 외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정미라, 『실천철학의 원리로서 자유의지』, 『이성과 자유』, 21세기북스, 2006, 132면.

34) 우드는 칸트의 도덕철학과 인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헤겔의 실천철학이 모두 궁극적으로 ‘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칸트철학과 헤겔철학을 “상호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헤겔 철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이 두 철학은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근대적, 계몽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이성적인 자율성의 윤리학의 두 형태”로 규정한다. Wood W. “Hegel’s Critique of Morality”, in: Siep L.(Hrsg)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147면. 이에 반해 투겐트하트는 도덕성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도덕적 주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기존의 법률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이 행해야 할 바는 이미 공동체 속에 놓여있다. 개별자의 고유한 양심은 사라지지 않으며 반성의 자리에 신뢰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헤겔이 도덕성의 인륜성으로의 지양과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Tugendhat, E., *Selbstbewußtsein und Selbstbestimmung*, Frankfurt a. M.,

헤겔은 인륜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철학』 서문에서 제시한 “자유 의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의지의 자유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³⁵⁾이 아닌, ‘나와 우리의 통일’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위 할 경우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며, 타인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나의 특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들을 함축한 보편성을 담지해야만 한다. 헤겔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실천적 의지는 단순히 욕망과 충동만이 아닌 이론적인 사유 활동을 포함한다. 즉 헤겔은 의지를 추동하는 실천적 힘은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지만, 욕망을 실현하는 행위에는 사유가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유는 무엇보다 보편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의 특수한 행위가 타인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을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욕구를 실현하려는 사유하는 의지는 타인들의 인정이라는 보편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데, 의지의 이러한 보편성은 규범과 법규, 그리고 관습을 포함한 제도들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³⁶⁾

헤겔은 ‘인륜성’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서 개인들의 의지가 표현된 공동체의 구체적인 형태들로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제시한다. 인륜성의 세 가지 계기인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는 현실 세계에서 각각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병렬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첫 번째 단계인 가족에서 다음 단계인 시민사회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국가로 지양되는 - 이전 단계가 폐기되고 동시에 보존되며,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 변증법적 관계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헤겔은 인륜

Suhrkamp, 1979, 349면. 그러나 근대의 도덕적 주체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겔이 제시한 인륜성은 단순히 개인을 규제하는 외적 제도가 아닌 상호주관성을 자신의 원리로 삼으며, 도덕적 주체의 반성적 사고를 전제하고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35) Hegel, G.W.F., 앞의 책, § 15 Anmerk.

36) 헤겔은 자유의지의 사변적 구조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 이해하며, 이러한 통일이 실현될 때 비로소 의지는 자유로운 것으로 규정한다. Hegel, G.W.F., 앞의 책, § 5~ § 7.

성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인륜성’의 첫 번째 계기인 가족은 구성원들이 자연적인 감정인 사랑에 의해 매개된 공동체이며, 개인들은 자신들을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가족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특수한 권리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헤겔은 가족에 내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비대칭성을 사랑이 지닌 “오성으로써는 풀리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모순”으로 정의한다. 개인의 개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꺼이 타인에게 자신을 방기하는 것이 사랑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이다.³⁷⁾ 그러나 가족을 연결하는 자연적 감정으로서 사랑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며, 공동체가 확대될수록 사랑에 의한 개인들의 친밀한 연결성은 희미해진다. 또한 가족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가족으로 분화되며, 분화된 가족들은 더 이상 자연적 사랑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주체로서 서로가 외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헤겔은 자연적인 사랑에 의해 매개된 가족으로부터 분화된, 독립된 가족들에 의해 작동되는 공동체를 ‘인륜성’의 두 번째 단계인 ‘시민사회’로 규정한다. “근대세계에 속하는 것”³⁸⁾인 시민사회는 근대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사회라 할 수 있다. 인륜성의 첫 번째 계기인 가족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가 우선시되었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욕구의 주체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적인 인격체”³⁹⁾로서 개인

37) 헤겔은 개인과 공동체의 직접적인 통일을 ‘사랑’ 속에서 찾는다. 이러한 사랑은 그의 초기철학에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매개시키는 보편적인 원리로 사용되나 그의 『법철학』에서는 “직접적인 자연적인 감정”으로서 인륜성의 최초 단계인 “가족”이 근거하는 원리이다. Theunissen은 ‘상호인정’에 근거한 개인과 공동체의 통일에 의해 “타자속에서 자기결에 있음 (Beisichsein im Anderen)”(Hegel, G.W.F., 앞의 책, § 7 Zu.)이라는 헤겔의 자유의 의미를 “의사소통적 자유”로 규정하고 ‘타자’가 더 강조 될 때는 ‘사랑’이며 ‘자기결에 있음’이 강조될 때는 ‘인정’임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라는 동일한 원리에 근거해 있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다. Theunissen, M., *Sein und Schein*, Frankfurt a. M., Suhrkamp, 1980, 49면.

38) Hegel, G.W.F., 앞의 책, § 182 Zu.

39) Hegel, G.W.F., 앞의 책, § 187.

들이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욕구만족을 위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공동성의 형식”⁴⁰⁾을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욕구 충족이 자기의 노동과 타인의 노동, 그리고 타인의 욕구 충족과 매개되어 있는 - 욕구의 체계”⁴¹⁾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범을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전면적인 상호의존의 체계”⁴²⁾이기 때문이다.⁴³⁾

헤겔은 개인의 욕구를 무한히 인정하는, 근대를 특징짓는 ‘시민사회’를 통해 비로소 국가의 이념이 현실성을 갖게 된 것으로 진단한다. 헤겔에게 시민사회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인륜적 총체로서 자유의 실현”⁴⁴⁾이 가능한 국가의 토대를 구성한다. 즉 시민사회는 개인의 특수한 욕구의 권리를 무한히 인정하며, 동시에 개인들이 욕구 만족을 위해 타인과 필연적으로 매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개 과정은 개인들을 “도야(Bildung)”⁴⁵⁾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공동성에 의해 매

40) Hegel, G.W.F., 앞의 책, § 182.

41) 같은 곳.

42) Hegel, G.W.F., 앞의 책, § 183.

43) 이와 관련하여 헤겔은 “시민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그 밖에 일체의 것은 그에게 무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나 타인과 관련되지 않고는 스스로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없으니, 결국 타인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가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들의 특수한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에 공동의 형식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복리와 타인의 복리를 다 함께 만족시킴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82 Zu.

44) Hegel, G.W.F., 앞의 책, § 258 Zu.

45) Bildung은 도야, 교양, 교육, 형성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도야’로 번역해 사용한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노예가 노동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대상을 새롭게 만들고(bilden), 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Bildung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Bildung은 노동과 욕망으로 상호 긴밀하게 얽혀있는 『법철학』의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어찌는 수 없이 타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노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그는 “노동과 도야를 통한 자기형성으로 공동성의 형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극복되고 국가로 고양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Hegel, G.W.F., 앞의 책, § 187 Anmerk.

개되어 있기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와 의지 그리고 행위를 공동의 방식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⁴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비로소 도야된다. 그리하여 헤겔은 시민사회를 “보편성의 형태로 고양된 무한히 주체적인 인륜적 실체성에 다다르기 위한 절대적인 통과점⁴⁷⁾”으로 규정한다. 헤겔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즉 국가의 이념은 개인의 특수한 권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리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기의식과 상관없이 개인들을 보편적인 존재로 도야시키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에게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로서 국가란 “인격적인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이익이 완전히 발양되어 그들의 권리가 그 자체로 인정되는 동시에 그들 개인이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향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를 가지고 ‘...’ 공동의 이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활동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동체이다.⁴⁸⁾ 그는 이러한 국가를 국가의 이념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권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근대의 시민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의 이념의 단초를 발견한다.⁴⁹⁾ 따라서 국가는 근대적 이념에 내재해 있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들의 자율성에 근거한 지와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이념은 개인의 의지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인 세계사 속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실현된다. 헤겔은 자유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논리적 과정을 서술한 『법철학』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토대를 두며, 이러한 의지가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인 세계사와 함께 마무리한다. 따라서 “자유

46) Hegel, G.W.F., 앞의 책, § 187.

47) Hegel, G.W.F., 앞의 책, § 187 Anmerk.

48) Hegel, G.W.F., 앞의 책, § 260.

49) 헤겔은 시민사회보다 국가가 먼저 존재하지만, 국가의 이념은 시민사회가 발전하게 된, 자신이 살았던 근대에야 비로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철학자로서 헤겔은 “황혼이 깃든 후에야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Hegel, G.W.F., 앞의 책, 54쪽)처럼 시민사회를 경험한 후에야 국가의 이념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헤겔은 철학의 과제를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시대는 개인의 특수한 권리의 무한한 확장을 인정하는 시민사회이며,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특수성의 권리에 근거해 있는 근대적 국가의 이념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Hegel, G.W.F., 앞의 책, 26면.

개념이 현존⁵⁰⁾하는 인륜적 공동체와, 이러한 인륜적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개인들에게 이질적이며 낯선 외적인 제도가 아닌, 자유롭고자 하는 개인들의 본성에 내재하는 “제 2의 본성⁵¹⁾”이라 할 수 있다.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는 변화하지 않은 실체적 존재가 아닌, 세계사 속에서 “활동과 행위⁵²⁾”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나 동시에 개인들의 자유 실현을 위한 궁극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5. 맺는 말

헤겔은 철학의 과제를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하는 것⁵³⁾”으로 규정한다. 철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며, 과거에 대한 단순한 서술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인 근대적 정신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해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지배적인 가치가 됨으로써 야기된 근대의 분열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가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논리적 과정을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헤겔은 『법철학』을 궁극적으로 ‘인륜성’으로, ‘인륜성’의 마지막 단계를 ‘국가’로 끝맺으면서 많은 철학자들에게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철학자라는 오해를 불러왔다. 그러나 『법철학』에 지속적으로 관통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근대적 이념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이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할 뿐이다.

헤겔은 인간을 독립된/고립된 주체로 이해하는 근대적 사유, 특히 자연법적 사유를 비판하며, 인간을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과 사회, 역사를 만들어가는(bilden) 주체로 이해한다. 즉 개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매개된 존재이며, 개인의 정체성

50) Hegel, G.W.F., 앞의 책, § 142.

51) Hegel, G.W.F., 앞의 책, § 151.

52) Hegel, G.W.F., *Nürnberg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1817*,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4*, Frankfurt a. M., Suhrkamp, 1971, § 175.

53) Hegel, G.W.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26면.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헤겔은 이러한 관계성을 예나시절부터 통합의 원리로 발전시켜온 상호 인정개념을 통해 포착하며, 이러한 인정관계가 법과 규범, 제도들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원리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실현은 타인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타인과의 인정관계는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외적인 제도, 즉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헤겔은 고립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그리고 개인이 종속되어야 하는 국가라는 외적인 정치체제를 그 자체로 옹호하지 않는다. 그에게 인륜적 공동체와 이러한 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인정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하는 정치체제이며,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실현이라는 국가의 이념이 현실성을 획득해 나가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로 귀결되는 헤겔의 『법철학』을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헤겔 『법철학』의 논리적 전개 과정과 근대 자연법 사상과의 치밀한 철학적 논의를 배제하고, 결과주의에만 매몰될 때 가능하다. 물론 세계사 속에서 국가의 이념인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이다.⁵⁴⁾

본 논문의 주된 주제는 헤겔이 인륜적 공동체와 국가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적 논의들, 즉 추상법과 도덕성, 시민사회를 자신의 철학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내는지를, 그리하여 국가의 이념에 내재해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이 헤겔의 국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여전히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본 논문의 논의를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가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54) 헤겔이 제시한 국가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헤겔의 국가는 “규범적인 정치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종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562면.

■ 참고문헌

- 김준수, 「근대의 자연법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체계」, Hegel, G.W.F., 『자연법』, 김준수 옮김, 한길사, 2004.
- 나중석, 『차이와 연대』, 도서출판 길, 2007.
- 이충진, 『이성과 권리』, 철학과 현실사, 2000.
- 정미라, 「실천철학의 원리로서 자유의지」, 『이성과 자유』, 21세기북스, 2006.
- Angehrn, E., *Freiheit und System bei Hegel*,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 Bobbio, N. “Hegel und Naturrechtslehre”, Riedel, M.(Hrsg.), *Material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2*, Frankfurt a. M., Suhrkamp, 1975.
-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3*,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_____, *Nürnberger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 - 1817*,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4*, Frankfurt a. M., Suhrkamp, 1971.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5*, Frankfurt a. M., Suhrkamp, 1972.
- _____,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7*,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_____,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III*,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8,9,10*, Frankfurt a. M., Suhrkamp, 1970.
- Kant, I., *Metaphysik der Sitten*,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 Berlin und Leibzig, 1907.
- _____,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in: Königlich F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Hrsg.), *Kant's gesammelte Schriften VI*, Berlin und Leibzig, 1907.
- Hobbes, T., *Leviathan*, Frankfurt a. M., Suhrkamp, 1984.
- Ottmann H., *Individuum und Gemeinschaft bei Hege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 Popper, K.R.: *Die offene Gesellschaft und ihre Feinde*, Tübingen, J.C.B.Mohr, 1992.
- Siep, L., “Intersubjektivität, Recht und Staat, in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und Horstmann R.P. (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Theunissen, M., *Sein und Schein*, Frankfurt a. M., Suhrkamp, 1980.

_____, “Die verdrängte Intersubjektivität in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in:
Henrich D., Horstmann E.P.(Hrsg.), *Hegels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Klett-Cotta, 1982.

Tugendhat, E., *Selbstbewußtsein und Selbstbestimmung*, Frankfurt a. M., Suhrkamp,
1979.

Wood W. “Hegel’s Critique of Morality”, in: Siep L.(Hrsg)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Abstract |

The Ethical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Freedom in Hegel's Philosophy of Law

Chung, Mila

The core theme of Hegel's practical philosophy is the freedom of an individual, the dominant ideology in modern Europe and a key slogan of the French Revolution. In his Philosophy of Law, Hegel defines 'the ethical(die Sittlichkeit)' which begins with 'family,' going through 'civil society,' and concludes with the 'state', as the final stage of realization of the freedom. By doing so, he demonstrates that the freedom of an individual can be concretely realized only within the community of 'Sittlichkeit,' ultimately within the 'state.' Hegel's discussion of freedom in the Philosophy of Law has provoked various criticisms, most of which can be reduced to branding Hegel as a statist philosopher(Staatsphilosoph) who places the community, in the end the state over the individual. This work aims to illuminate the true meaning of Hegel's ethical community(sittliche Gemeinschaft) and the state by examining the problem of mediation (Vermittlung)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community, which Hegel demonstrates in his Philosophy of Law.

Key Words: Hegel, the ethical community, the individual freedom, the modern natural law, the state